

「의료급여법」 제32조3,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18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9호, 2018. 12.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각 호에 “6. 부당청구 행위를 한 사람이나 이를 공모한 사람이 신고한 경우 7. 보험공단·심사평가원 임직원 또는 공무원 등 직무관련자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얻은 자료나 정보를 제공받아 신고한 경우(그 자료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신고하도록 한 경우를 포함한다) 8. 동일한 신고내용으로 다른 기관에게서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9. 신고내용의 확인 또는 포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추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포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p>1. ~ 5.(생략)</p> <p><u><신설></u></p>	<p>제7조(포상금의 지급 제외)----- ----- -----.</p> <p>1. ~ 5.(현행과 같음)</p> <p>6. <u>부당청구 행위를 한 사람이나 이를 공모한 사람이 신고한 경우</u></p> <p>7. <u>보험공단·심사평가원 임직원 또는 공무원 등 직무관련자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얻은 자료나 제보를 제공받아 신고한 경우 (그 자료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신고하도록 한 경우를 포함한다)</u></p> <p>8. <u>동일한 신고내용으로 다른 기관에게서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u></p> <p>9. <u>신고내용의 확인 또는 포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u></p> <p>10. <u>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u></p>